

의안번호	2213552
의 퇴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E553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주권상장법인 등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비고
1	안 제14조 (과세표준의 계산)	○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국내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			
2	안 제129조 (원천징수세율)	○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법인에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			
		2천만원 이하	2천만원 ~ 3억원 이하	3억원 초과	
		9%	20%	25%	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조 (과세표준의 계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9조 (원천징수세율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국내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

-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개인주주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규모 이외에도,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함
 - 그러나 개정안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집합투자기구를 선별하여 해당 펀드가 개인에 지급하는 배당 규모, 개인별 배당소득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므로,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참고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을 유가증권상장사로 한정하는 경우, 향후 5년간('27~'31년) 약 8.1조원(연평균 1.6조원)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
 - 자산총액 60% 이상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¹⁾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할 경우, 세수감소 효과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1) 2025년 10월 말, 전체 ETF 자산총액은 276조원으로 KOSPI 시가총액(3,383조원) 대비 8.2% 수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